

Policy and Law Report _Vol.49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8. 17. ~ 8. 21.)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인 “5대 분야 20개 과제” 및 “2020년 추진 계획”을 소개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식약처1]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020. 8. 14.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사용목적이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하는 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제출하도록하여 희귀·난치 질환자의 의료기기 접근성 확대, ② ISO(국제표준화기구),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규격에 추가 등이 있음

[참고자료]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등 민원 편의 증진 추진



[식약처2] 의료제품 허가·심사체계 개편

2020. 8. 18.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의료제품 허가 및 심사체계를 개편함. 주요 내용으로 ① 의료제품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 개과를 신설하여 운영, ② 최근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심사 등의 신규업무 처리를 위해 분야별 첨단기술 전문가 확충 및 맞춤형 심사체계 도입 등이 있음

[참고자료]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



[과기부1]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을 수행할 4개의 협력체 확정

2020. 8. 18. 한국형 뉴딜 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상을 위한 과제로 지역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을 위한 협력체를 선정함. 주요 내용으로 ① ICT컴플렉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과 테스트를 위한 고성능 장비, 서버 및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ICT) 기기 등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커뮤니티 공간 지원, 각종 네트워크 행사, 기술 세미나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② AI복합교육 공간은 기초에서 고급까지 수준별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신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이 참여한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등을 통해 실무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융합인재 양성 등이 있음

[참고자료] 지역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AI, SW 재양성 지역 거점 선정



[과기부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

2020. 8. 19.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함. 주요 내용으로 ① 1억 원 이상의 모든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는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조기 결정토록 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 ②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 ③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찰과정에서 희망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해 우대 등이 있음

[참고자료] 공공SW사업 발주관리 강화 및 원격개발 활성화 추진 

[과기부3] 연구장비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2020. 8. 20. 연구장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장비 개발을 위해 기업·수요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술개발, 특허분석,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규격 및 제품화까지 패키지 지원 추진, ②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활용을 촉진하고 연구장비에 필수적인 물성데이터 등을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③ 기 구축된 ‘국산장비공동활용랩’을 확대하여 우수 국산 연구장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자가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연구장비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산자부1]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

2020. 8. 19. 에너지전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 ① 유망 효율개선 사업 중심으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용자 지원 및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세액감면 연장, ② 에너지다소비 사업장(年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대상 자발적 원단위 개선 목표제를 도입하여 효율향상 투자 촉진 및 에너지공급자 대상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판매량 대비 일정비율)를 부여하여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EERS), ③ 단기적으로 기 구축한 전력 데이터 공유 플랫폼 고도화 및 중장기적으로 전력 뿐만 아니라 가스, 열에너지 정보를 통합한 ‘에너지 빅데이터 개방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 

[산자부2]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2020. 8. 20. 대-중견-중소 협업에 기초해 산업 전반에 DNA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 ① 산업 R&D 전단계에 지능화 방법론을 적용하고, 제조기반 신서비스 창출이 유망한 전략분야 발굴·지원, 신규과제 20% 이상을 대규모 통합형 R&D 추진, ② ‘산업 지능화 펀드(4,000억)’를 통해 선도 기업에 60%이상 집중 투자하고, 유망 프로젝트에 사업화 패키지 지원, ③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법 제정 혹은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 검토 등이 있음

[참고자료]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국토부]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발표

2020. 8. 20.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PM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안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②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관련 법규 등의 정비를 통해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 ③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하여 등록제로 운영 등이 있음

[참고자료] 개인형 이동수단(PM) 법률 새로이 제정



***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해 선정한 5대 분야 20개 과제**

2020. 8. 20.자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정책 성공을 위한 5대 분야 20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5대 분야	20개 과제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순산업 스마트·디지털화	① 공공기관이 수집·보유한 양질의 데이터 개방·공유·확대 ②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③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주요산업 스마트화 지원 ④ R&D,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기관별 주요사업 스마트화 ⑤ 국가기반시설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등 SOC 디지털화
차세대 新산업 육성을 위 한 산업생태계 구축 및 공 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① 의약품·의료기기·연관산업 대상 R&D 확대, 사업화 지원, 인재 양성 등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 ② 전기·수소차 도입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자율주행차 활성화 기반 마련 등 미래차 산업 육성 지원 ③ ‘공공기관 혁신장터’를 통해 신기술·제품에 대한 초기판로 확보 및 기술개발 지 원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 벤처·창업 지원	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지원 ② 임직원의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③ 우수 스타트업·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컨설팅 지원
디지털·비대면新기술 활 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 신	①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하여 선제·예방적 대국민서비스 제공 ② 대국민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산 ③ 공공기관 고유사업을 비대면·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여 수행 ④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등 신기술 도입이 적합한 업무 발굴·활용 ⑤ 드론, AI, IoT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환경·인프라 분 야의 그린 뉴딜 투자 확대	①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선도 ②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기관별 선도사업 발굴·추진 ③ 스마트 그린도시, 스마트 상수도 체계 구축 등 공간 인프라 혁신 ④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친환경 전환

* 한국판 뉴딜 주요과제 2020년 추진 계획

[디지털 뉴딜]

분야	12대 과제	주관 부처	주요 관계부처
① D.N.A. 생태계 강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 1·2·3차 쏠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과기부	문체부 중기부
	•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행안부	과기부
	•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과기부	중기부
②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교육부	-
	•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교육부	고용부
③ 비대면 산업 육성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복지부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중기부	고용부 과기부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중기부	과기부
④ SOC 디지털화	•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 체계 구축	국토부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과기부
	•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국토부 산업부	-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국토부	해수부

[그린 뉴딜]

분야	8대 과제	주관 부처	주요 관계부처
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부	교육부
	•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환경부	해수부
	•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환경부	-
②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산업부	국토부
	•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산업부	해수부
	•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③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환경부	과기부

[안전망 강화]

분야	8대 과제	주관 부처	주요 관계부처
① 고용·사회 안전망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부	기재부 국세청
	•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부	고용부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고용부	중기부
	•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고용부	과기부
	•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부	중기부

② 사람투자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과기부 환경부	고용부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제로 개편	고용부	교육부
	•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과기부	문체부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관보19819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추가하고, 이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정하며, 해당 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별표 1, 별표 4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1인)]

사업자 간 합의 뿐만 아니라 동조적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도록 하고,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며,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고 이에 따른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64조의4 · 제64조의5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1인)]

유통산업이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유통데이터에 기반한 유통·물류시설 기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상품정보 등 유통데이터베이스 및 유통데이터의 교환체계나 거래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특히 유통환경 및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 15조제4항제5호, 제21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49인)]

현행법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전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 및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 3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세분화된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상향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8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 8. 27.)에 따라 도입된 신규제도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과는 달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에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등 20인)]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